

부산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6261 판결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626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735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1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73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21279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현, 판사 이은명, 판사 오영두